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일반산단에 수용성 절삭유 폐수
전량 위탁 처리 시 공장 입주 허용〉
■ 김종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631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국가 일반산단에 수용성절삭유 폐수 전량 위탁 처리 시 공장 입주 허용 ..	3
※ 참고자료	11
1.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	11
2. 「수도법」에 따른 공장설립 제한지역	12
3. 창원 제2국가산단(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개요	13
4. 창원 제2국가산단 후보지역 규제 현황도	14
5. 낙동강수계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현황도	1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종양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0. 10.
3. 회 부 일 : 2024. 10.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산업 경제의 제조업 중심지인 경남 지역은 관련 산업의 특성상 금속 절삭 등 기계 가공의 공정이 많은 만큼 이 과정에서 수용성 절삭유 등의 사용이 불가피함. 현재 경남도 내에만 11,530여개의 금속가공제품제조 관련 기업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이들 기업 중 일부는 수용성 절삭유 사용 시 발생한 폐수를 대부분 전량 위탁 처리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의 적용을 받는 지역내 산업단지의 경우, 특정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최초 입주가 제한되거나 당초 입주한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원료·생산공정 변경 등으로 특정수질오염물질 발생 시 시설폐쇄 등의 행정규제를 받으므로 인해 기업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실

정임.

또한 곧 조성될 창원 지역의 방위산업, 원자력 분야의 신규 국가산업단 입주 공장들은 기계산업의 특성상 절삭유 사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 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국가산업단 및 국가 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직결될 것임

이에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의 적용을 받는 공장이라 하더라도 수용성 절삭유 사용으로 발생하는 폐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승인된 산업단지 내에 입주를 허용함으로써 국가의 산업 발전과 원활한 기업활동 도모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국가·일반산업단에 수용성 절삭유 폐수 전량 위탁 처리 시 공장 입주 허용(안 제21조의2 신설)

개정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¹⁾에 입주하였거나 입주하려는 공장이 수용성 절삭유 사용으로 배출되는 폐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량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입주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표 1]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1조의2(산업단지 내 입주 업체에 관한 특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승인된 산업단지에 입주하였거나 입주하려는 공장이 수용성 절삭유 사용으로 배출되는 폐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량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안의 개정이유는 경남 지역의 국가·일반산업단지와 향후 조성될 창원 지역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입주 공장들은 기계 산업을 다수 영위하고 있으며 그 특성상 절삭유 사용이 불가피한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7항 및 제8항²⁾의 적용을 받는 지역 내에서는 수용성 절삭유 사용으

1) 산업입지법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산업단지는 각각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를 의미함

2)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로 인해 발생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방식으로 처리하는 등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입주가 제한되고 기존 입주한 공장에 대해서도 생산공정 등 변경 시 시설폐쇄 등의 행정규제로 인해 기업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수용성 절삭유 사용으로 배출되는 폐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에 공장의 입주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신규산단 조성 계획이 수립 중인 창원 제2국가산단 후보지가 속한 낙동강 하류지역은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구역이 설정되어 있어 산업단지 계획 구역 전체(100%)가 이에 해당되므로 현행 규제에 의해서는 기계 절삭유를 사용하는 산업을 영위하기가 곤란한 상황임³⁾.

-
- ⑦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
 - ⑧ 제7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⑨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 ⑩ 제9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 경남도청측의 자료에 따르면, 창원제2국가산단에서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등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업종이 산업시설용지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추정함.

[표 2] 창원 제2국가산단 후보지 규제현황

규제	규제법령	저촉지역 (개략 산정)	주요내용
폐수배출시설 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제33조, 환경부 고시	동읍·북면 전체 [3,648천m ² (100%)]	수용성절삭유 사용 시설 입지 제한
공장설립 제한지역	수도법 제7조의2	해당없음	
공장설립 승인지역	수도법 제7조의2	본포취수장 상류 7~15km [2,556천m ² (70.1%)]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입지 제한 ⇒ 폐수 전량위탁처리,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 시 승인 가능
공장설립 제한지역	농어촌정비법 제22조	주남저수지 상류 2km [1,120천m ² (30.7%)]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 제한 ⇒ 지원·주거·공공청사 등 규제 예외 시설 배치계획 수립

※ 해당지역은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구역에 해당되나 동조 제3항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지역에 해당되며 이 구역은 폐수를 전량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공장설립이 가능함

※ 자료 : 경상남도청

그런데, 일부 견해에 따르면 현행 「물환경보전법」, 「수도법」 등에 따른 상수원 수질규제는 전국 국토면적의 20% 이상을 규제하는 등 규제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읍·면·동 별로 지정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폐수 관리 수준이나 하천까지의 거리 등 유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에 관계없이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⁴⁾ 규제의 효율성과 합리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⁵⁾.

4) 워터저널, 오피니언(전문가 기고) “배출시설설치제한제약 제도 등의 개혁(정책제언)”, 2023.12.5. 내용 요약

5)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환경정책 킬러규제 개선과제」(2023.10.), “4대강 유역 폐수배출시설 제한대상 시설 예외 확대”

다만,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규제는 과거 여러 차례의 주요 수질오염사고⁶⁾ 등으로 막대한 비용이 초래됨에 따라 재발을 방지하고자 1991년 유역 구성원간의 합의를 거쳐 마련된 제도로 장기간 여러 침례한 갈등 속에서도 수질보호를 위한 주된 규제로서 작동해왔으며,

엄격한 폐수 관리 체계를 갖춘다 하더라도 특정수질오염물질⁷⁾의 예상치 못한 유출이나 지하수·토양 등을 통한 장기적 오염 발생 등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환경과 생명에 대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과학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기반으로 규제와 관련한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의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규제함에 있어 지역별, 오염물질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통해 입지를 제한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규제체계를 갖추고 있음⁸⁾.

6) 공정누출 사례(①'91년 구미 폐놀 유출사고, ②'12년 구미 불산유출사고 등), 무단배출 사례('94년 낙동강 유기용제 오염사고 등)

7) 수용성 절삭유는 금속가공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구리·납·비소·6가크롬·카드뮴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8)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에서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게 되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항은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규정된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환경부 고시)는 제3조(제한 대상시설)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제13의2] 등에서 규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함에 따라, 동 기준에 해당되는 수용성 절삭유 사용 공장은 입지가 제한되는 반면, 환경부고시 제3조 각 호에서는 폐수배출시설 중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출판시설·병원·세탁시설 등의 시설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외부 지역에 위치한 폐수배출시설 중 폐수무방류배출시설, 기준에 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입지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적용하고 있음.

예를 들면,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또는 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환경부 고시) 제3조에서는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있더라도, 기준 미만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각 호에서 정하는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이는 폐수배출시설 규제를 통하여 수질·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영업의 자유, 지역경제 여건 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만일 해당 규제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행령·부령·환경부고시 등의 개정을 통해 구체적이고 필요 최소한으로 규제를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현행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규제에 대한 특례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만일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물환경보전법」 등 현행 법체계 내에서 소화할 것인지, 또는 특별조치법에 해당하는 동 법의 개정을 통해 반영할지 등에 관하여 입법정책적 논의

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현행 「수도법」 제7조의2⁹⁾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물환경보전법」과 별개로 국민에게 질 좋은 물을 공급하고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을 보호하려는 법 규정임.

특별조치법에 해당하는 개정안에 의할 경우 창원·경남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산업단지 내 입주 공장에 대하여 「수도법」 제7조의2의 규정에 대해서도 예외가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창원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동법 개정 시 창원 제2국가산단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국가·일반산단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과도한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환경부 및 여러 지자체

9)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의 상수원 보호 및 하류 지역의 식수 안전 우려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환경부는 절삭유 시설은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납·카드뮴 등) 폐수가 발생하므로 상류 입지 시 수질사고로 상수원 오염이 우려되며, 특히 수질오염사고는 폐수의 정상처리 과정 외에도 의도적·비의도적 누출·유출에 따라 위탁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사고 우려가 상존하므로 처리방식과 상관없이 사전예방적 입지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은 납·카드뮴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폐수 유출 시 자연환경 및 국민의 건강 등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법 개정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임¹⁰⁾.

경상남도는 현행 환경 관련 입지 규제가 폐수 전량 위탁처리 등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을 통해 위험도를 낮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성 절삭유 사용기업의 입주를 금지하고 있어 과도한 측면이 있고, 쇠퇴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만큼 지역의 대표 산업인 기계 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0) 또한, 일부 지자체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일반법상의 규제를 회피하는 것은 법 운용상 통일성을 형해화 하고, 타 업종의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명분을 약화하여 제도 운영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460

※ 참고자료 1.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

○ (현황) 4계 수계, 총 13,092km² 지정

구 분		행정구역	제한면적(km ²) (전체유역면적대비)
계		58개 시·군·구, 303개 읍·면·동	13,091.8(19.8%)
한강	소 계	18개 시·군, 97개 읍·면	5,044.0(16.9%)
	팔당호 등	13개 시·군, 75개 읍·면	3,747.7(14.4%)
	임진강	5개 시·군, 22개 읍·면	1,296.3(35.9%)
금 강		대전, 충북, 충남, 전북, 경북 11개 시·군·구, 84개 읍·면·동	4,039.2(40.7%)
영산강·섬진강		전남 7개 시·군, 19개 읍·면	636.9(7.6%)
낙동강	소 계	24개 시·군·구, 103개 읍·면·동	3,371.6(14.2%)
	상중류	대구, 경북 11개 시·군·구, 35개 읍·면·동	1,358.4(9.0%)
	하류	경남 13개 시·군·구, 68개 읍·면·동*	2,013.2(23.4%)

* 창원시는 동읍, 대산면, 북면이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해당하며, 제2국가산단 후보지는 창원시 의창구 북면·동읍 일원에 위치함

○ (규제내용) 폐수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일정 기준* 이상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 제한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및 별표 13의2

- (예외*) ①위탁처리하는 생활밀접시설(병원·학교 등), ②폐수무방류배출시설** 등

*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한 대상시설)

** 법적으로 무방류배출시설 설치가 가능한 특정물질인 구리, 디클로메탄, 디클로로에틸렌을 배출하는 시설이 수질오염물질을 고체화하는 증발·농축시설, 유출차단·저류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 참고자료 2. 「수도법」에 따른 공장설립 제한지역

- **(지정대상)**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및 취수시설의 상·하류 일정 지역
- **(지정기준)** 취수원 주변 일정지역을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일부 지역을 공장설립승인지역으로 지정
- **(규제내용)**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설립 제한

*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사업장**이면 모두 공장으로 분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지정 기준>

구분			내용
제한 지역	상수원	지정	· 보호구역 상류 10km 이내* * 취수시설 용량이 20만m ³ /일 초과 시 20km
	보호구역	미지정	· 취수시설 상류 15km하류 1km 이내
	지하수 취수시설		· 취수시설 반경 1km를 제한지역으로 지정
승인 지역	1호 지역		· 취수시설로부터 7km 초과 지역
	2호 지역		· 취수시설로부터 4km 초과 7km 이내 지역* * 하천·호소 경계 500m 이내 제외

* 모든 거리는 유하거리(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로 측정

* 자료: 환경부

- **(입지조건)** 공장설립승인지역 내 일정 조건 갖춘 공장 입지 가능

❶ **1호 지역(7km 초과 지역) : 폐수배출시설* 및 유독물영업허가 대상이 아니면서, 오수처리에 대한 일정기준**을 준수한 공장**

* 같은 법 제32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全量)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과 같은 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

** ①오수전량 공공하수처리장 유입 ②총량제 지역이며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③강변여과수 취수 지역 또는 ④오수발생량 10m³/일 미만

❷ **2호 지역(4~7km 지역) :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소규모 생계형 13개 업종* 설립 가능**

* 떡볶류 제조업, 커피 가공업, 코코아과자류 제조업, 면류 제조업, 곡물도정업, 장류제조업, 커피가공업, 차류가공업, 인삼제품제조업

※ 참고자료 3. 창원 제2국가산단(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개요

□ 사업개요

- 위치/면적 : 창원시 의창구 북면·동읍 일원 / 339만 m²(103만평)
 - 사업비/기간 : 1조 4,215억 원 / '23 ~ '30년
 - * 분양예정가 260만원/평(78.4만원/m²) 정도
 - 사업시행예정자 : LH,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 개발방향 : 방위·원자력 분야 시장확대에 따른 관련 산업 육성
- ※ (경제효과) 직접투자 7.9조원, 생산유발 15.2조원 / (고용) 직접 18,590명, 유발 51,601명

□ 추진경과

- ('23.3월)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 발표(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 ('23.3~4월) 토지거래허가구역(道) 및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 공고(市)
- ('23.4월) 사업시행예정자(LH,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선정(국토부)
- ('23.9월~) 사업추진 관련 규제 개선* 건의(수용성 철삭유 입주 허용)
 - * 「(환경부 고시)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개정 건의(국토부, 환경부, 기재부, 중앙지방협력회의, 지역 국회의원 등)
- ('23.12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LH)
- ('24.10월) 기업활동 규제완화법 개정안 발의(김종양 의원, 창원시 의창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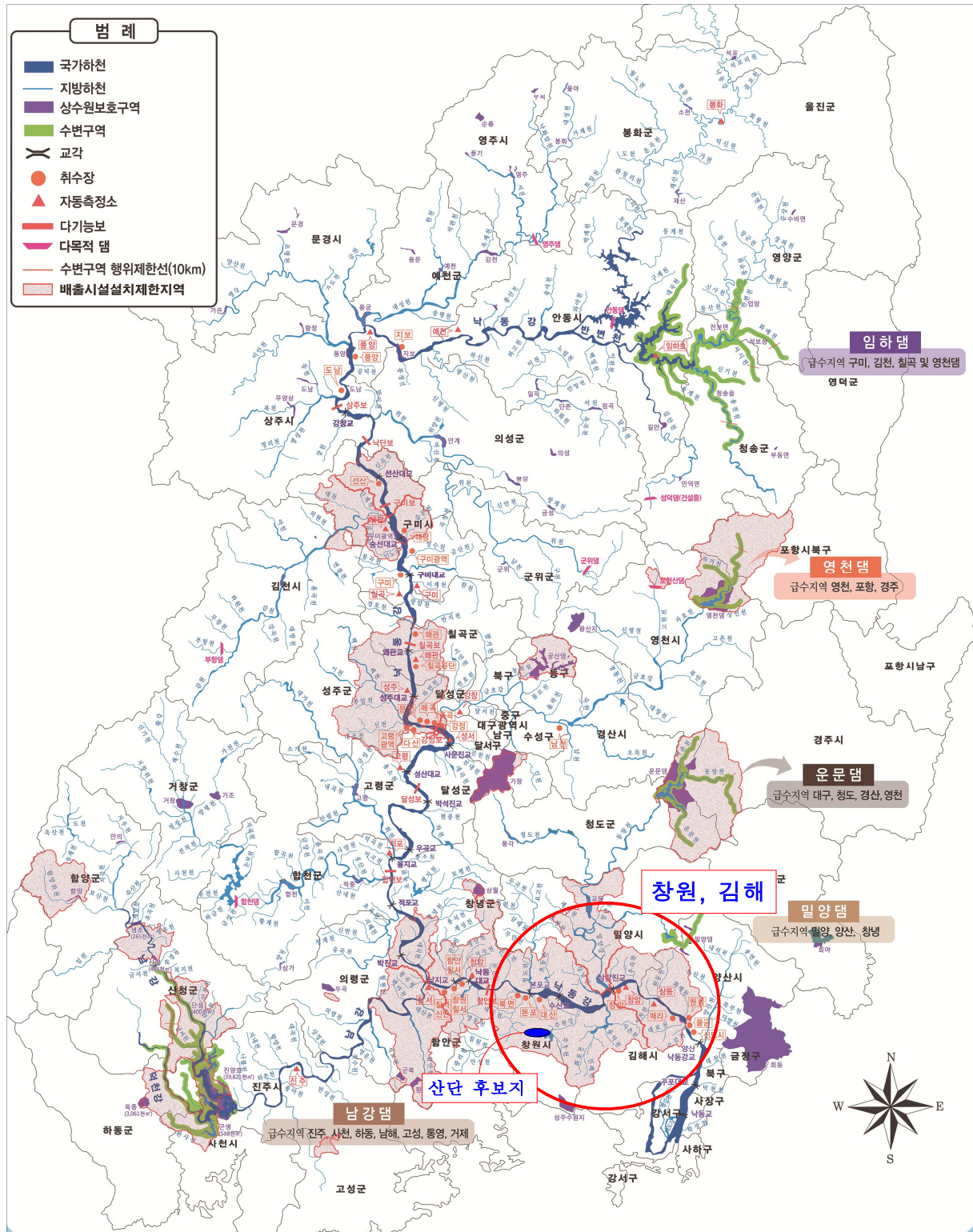
□ 향후계획

- ('25.3월)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LH→KDI, 기재부)
- ('25.9월) 산업단지계획(GB해제 등 포함) 승인 신청(LH→국토부)
- ('26.上) 산업단지계획 심의 및 승인 고시(국토부)
- ('26.上~30.12월) 조성공사 착공 및 사업준공

A map of the Changwon National Park area. The map shows various administrative boundaries in red and blue. Key locations labeled include '월곡면' (Wolguk-myeon), '월서면' (Wolsa-myeon), '월전읍' (Woljeon-eup), '창원시 의창구' (Changwon-si Uichang-gu), '대산면' (Daesan-myeon), '동경동' (Donggyeong-dong), '소계동' (Sogye-dong), '서상동' (Seosang-dong), and '도계동' (Dogye-dong). A blue circle highlights a specific area on the eastern side of the map, near the '창원시 의창구' label. The text '창원 국가산단' (Changwon National Park) is prominently displayed in a blue box over the highlighted area.

– 14 –

※ 참고자료 5. 낙동강수계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현황도



자료: 환경부